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0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항공·철도·항만 분야별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성능인증제도를 운영 중으로, 보안검색장비 제작자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항만 보안검색장비의 경우 동일한 인증항목에 대해서는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시 인증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철도·항만 분야별 인증제도 상호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철도안전법」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해당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능인증 평가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평가 면제 조건 마련

3. 의견제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 044-201-5626

○ 전자우편 : whidra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